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51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김용태·박충권·백종헌

곽규택 · 서지영 · 조은희

주호영 • 진종오 • 유용원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 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② (생	및 협의·조정)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	③		
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			
는 사업을 신설 ·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			
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			
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		
	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